

# (사)대한육상연맹 공인제도운영규정

## 제1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대한체육회 '회원종목단체규정' 제4조제4항에 따라 본 연맹의 공인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.

### 제2조(공인제도 운영)

- ① 본 연맹은 세계육상의 경기규칙에 의거한 규격품 사용을 제도화하여 안전하고 공정한 경기운영 및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공인제도를 운영한다.
- ② 공인제도 운영을 통해 외국산 경기 용품의 수입을 억제하고 국산경기용품의 생산을 촉진하여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내·외 경기대회 참가 및 훈련에 국산 경기용구를 사용하도록 한다.
- ③ 본 연맹은 대한체육회 '회원종목단체규정' 제4조제3항에 따라 공인과 관련하여 세계육상의 공인규정을 벗어난 공인 요건을 신설하거나 특정 업체의 제품 사용을 강요하거나 공인료를 필요 이상으로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.

**제3조(회원종목단체의 규정 제정)** 본 연맹은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라 경기시설·장비와 관련된 공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'경기시설·용품 공인규정'(이하 "공인규정"이라 한다)으로 정하여야 한다.

## 제2장 위원회

**제4조(위원회 설치)** 본 연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시설·용품 시설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1. 경기시설·용품 공인 및 검정
2. 경기시설·용품의 타당성 검토
3. 경기시설·용품의 안전성 검토
4. 공인신청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심사
5. 공인품목에 대한 사후관리
6. 외국산 경기용품 수입 승인 및 관세감면에 관한 사항
7. 공인 약정 준수 여부 확인
8.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 및 조언
9. 기타 경기시설·용품의 공인과 관련된 업무

### 제5조(위원회 구성)

-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.
  1. 위원장 1명
  2. 부위원장 1명
  3. 위원 7명 내외(위원장, 부위원장 포함)

- ② 위원회의 위원은 경기인 출신, 공학·생산 분야 전문가, 인증 전문가, 법률가 등 전문 분야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여야 하며, 위원회는 위원의 과반수가 외부인사로 구성되어야 한다.
- ③ 위원은 다른 본 연맹의 경기시설·용품 공인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다.
- ④ 위원장은 위원 중 외부인사로 호선하며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본 연맹 사무처장 또는 직원으로 한다.

**제6조(위원의 직무)**

-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.
-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.

**제7조(임기)**

-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본 연맹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.
-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- ③ 세계육상에서 발행하는 국제자격증 소지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
**제8조(위원의 해촉)** 본 연맹의 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하여야 한다.

1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질병,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제10조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
5.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

**제9조(회의)**

- ① 위원회의 회의는 본 연맹의 장 또는 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.
-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10조(제척 및 회피)**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
**제3장 공인 심의**

**제11조(공인대상)** 공인은 육상 종목의 경기시설(부대시설 포함) 및 경기용품을 대상으로 하며 업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.

## 제12조(심의기준)

- ① 본 연맹은 공인 심의를 위해 경기적합성, 품질, 안전성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하며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공인 대상에 대해서는 공인 대상 수의 제한 등 별도의 추가 조건을 두지 않고 공인하여야 한다.
- ② 종목별 공인 관련 기준은 세계육상 규정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서는 아니 되며, 세계육상 기준과 상이한 기준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 및 사유를 '공인규정'에 명시하여야 한다.
- ③ 본 연맹은 공인 심사신청을 받기 30일 전까지 공인을 위한 평가항목, 평가기준, 평가방법, 평가실비, 공인료 부과 기준, 세계육상의 규정 등 세부사항을 본 연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.

**제13조(공인에 대한 제척)** 본 연맹의 임·직원 및 그 친족이 임·직원으로 있는 업체의 용품은 본 연맹으로부터 독점 공인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, 대회 공인의 제한을 받는다.

## 제14조(심의방법)

- ① 위원회는 공정한 공인심사를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써 그 평가를 전문평가업체에 의뢰할 수 있다.
- ② 평가방법은 서류평가, 전문기관에 의한 설비·용품 검사, 현장 테스트 평가 등 객관적으로 하여야 한다.

## 제15조(시설 공인)

- ① 위원회가 경기시설에 대해 공인을 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심의기준을 면밀히 검토한 후 공인을 승인하여야 한다.
  1. 경기시설 및 부대시설의 국제규격 부합 여부
  2. 시공업체의 유사 경기시설 시공 실적
  3. 시설의 하자보수 보증 기간
  4. 시공업체 선정 시 공개입찰 여부 등 선정 절차의 공정성
- ② 시설 공인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경기시설의 설계단계부터 본 연맹과 협의하여야 한다.

## 제16조(용품 공인)

- ① 위원회는 경기용품에 대해 공인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심의기준을 면밀히 검토한 후 공인을 승인하여야 한다.
  1. 경기용품의 세계육상 기준 부합 여부
  2. 경기용품 생산업체가 해당 공인용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(사업자 등록 유무, 자산 규모, 세금 납부실적, 생산시설 규모 및 기술진, 사업 실적 등)
- ② 대회에서 사용되는 경기용품의 결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- ③ 국제대회, 국내종합대회 및 전국규모대회를 주관하는 단체가 대회에서 사용되는 경기용품을 제공하는 경우 경기용품 결정 전 대회 주관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.

## 제17조(공인료)

- ① 본 연맹은 경기 시설 및 용품에 대한 공인료 기준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'공인규정'의 별표로서 명시하여야 한다.
- ② 공인료는 공인을 위한 출장비 및 평가비 등 실비를 반영하여 책정하며 그 산출내역을 공인료 기준표에 적시하여야 한다.
- ③ 본 연맹은 공인료 수입에 대해서는 예산계정을 별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며 그 집행에 대해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.

**제18조(공인기한)**

- ① 시설에 대한 공인기한은 5년으로 하되 본 연맹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.
- ② 용품에 대한 공인(검정)기한은 별도로 두지 않으며, 각 업체에서 제작 후 신청 건별로 공인(검정)하되 본 연맹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.

**제4장 사후 관리**

**제19조(결과 공개)** 본 연맹은 공인의 결과에 대해 이사회 및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하고, 공인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하여 본 연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.

- 1. 공인 대상 시설 및 용품 목록
- 2. 공인 기간
- 3. 공인 시설 및 용품 생산업체의 대표자 성명, 상호, 주사무소 주소
- 4. 공인료

**제20조(시정요구)**

- ① 본 연맹은 공인 후에도 해당 시설·용품이 관련 규정 및 규격에 위배되거나 그 품질이 저하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② 공인 후 시설 및 용품의 하자로 인해 경기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거나 문제점 보완에 대한 본 연맹의 지시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공인기간 중이라도 본 연맹은 공인 대상에 대해 공인의 정지 또는 취소 등의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.

**제5장 보 칙**

**제21조(규정의 해석)**

- ① 이 규정은 본 연맹'공인규정'에 우선하며, '공인규정'을 대한체육회 규정에 맞게 변경하지 아니하여 대한체육회 규정과 상이할 경우에는 대한체육회 규정을 따라야 한다.
- ② 본 연맹이 대한체육회 규정을 준용할 수 없거나 관련된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본 연맹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그 결과를 대한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22조(개선요구)** 대한체육회는 공인제도 운영과 관련해 본 연맹에 제도 개선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본 연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대한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23조(규정의 제·개정)**

- ① 본 연맹이 '공인규정'을 제·개정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때 세계육상의 공인 관련 규정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대한체육회로부터 승인받은 '공인규정'은 본 연맹 홈페이지에 즉시 게시하여야 한다.
- ③ 대한체육회는 본 연맹 '공인규정' 승인을 위해 소관 부서 내에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## **부 칙(2020. 1. 20.)**

**제 1 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**제2조(경과조치)**

- ①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공인을 받아 계약기간 중에 있는 업체 및 품목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따라 공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.